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33
----------	-------

제안연월일 : 2026. 5 .

제안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전체회의 상정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16	김병주의원	2025. 8 . 6.	2025. 11. 27.
	2215481	임종득의원	2025. 12. 22.	2026. 3. 17.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4.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4.1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그 밖에 품질보증을 위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5항 중 “7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20일

-----.